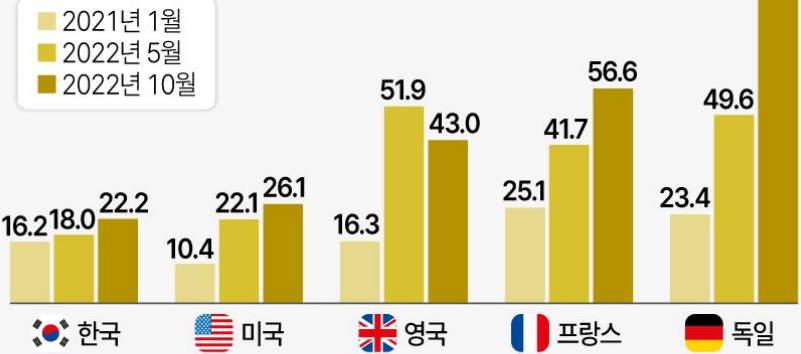


회색 코뿔소: 위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큰 위험에 처하는 상황

## 국가별 가스요금 추이

\* 최종 소비자가격(세금 포함) 기준

단위: MJ당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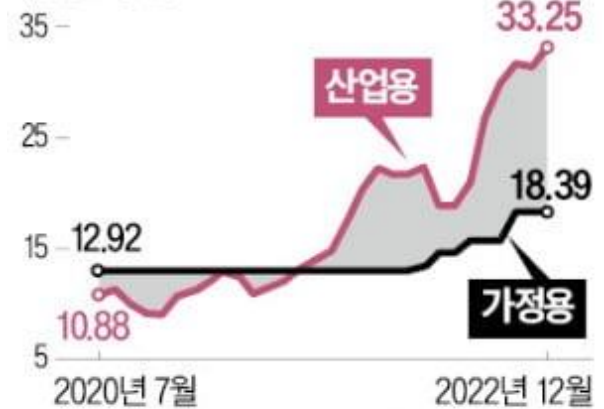


연합뉴스

자료: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 가격역전된 가정·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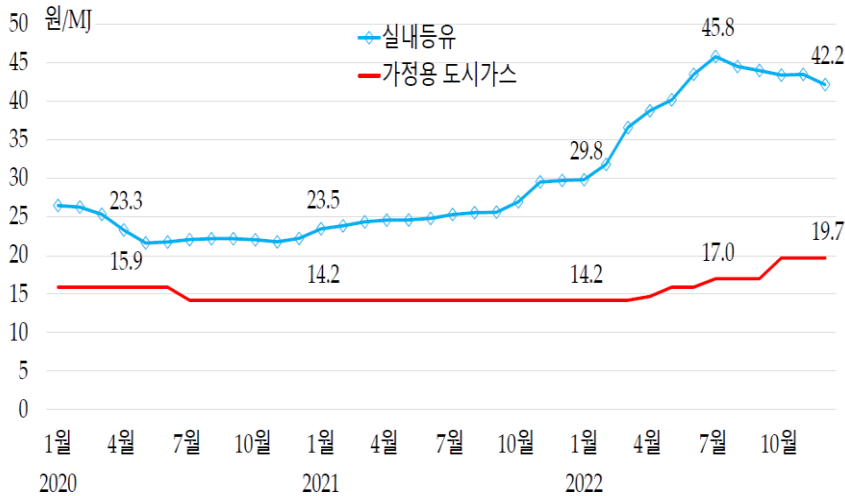
(단위: MJ당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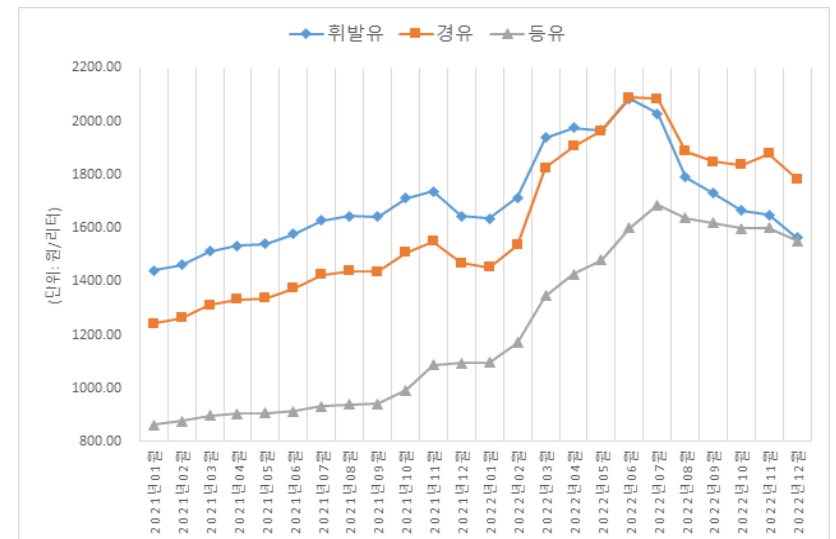
\* 전국 도매요금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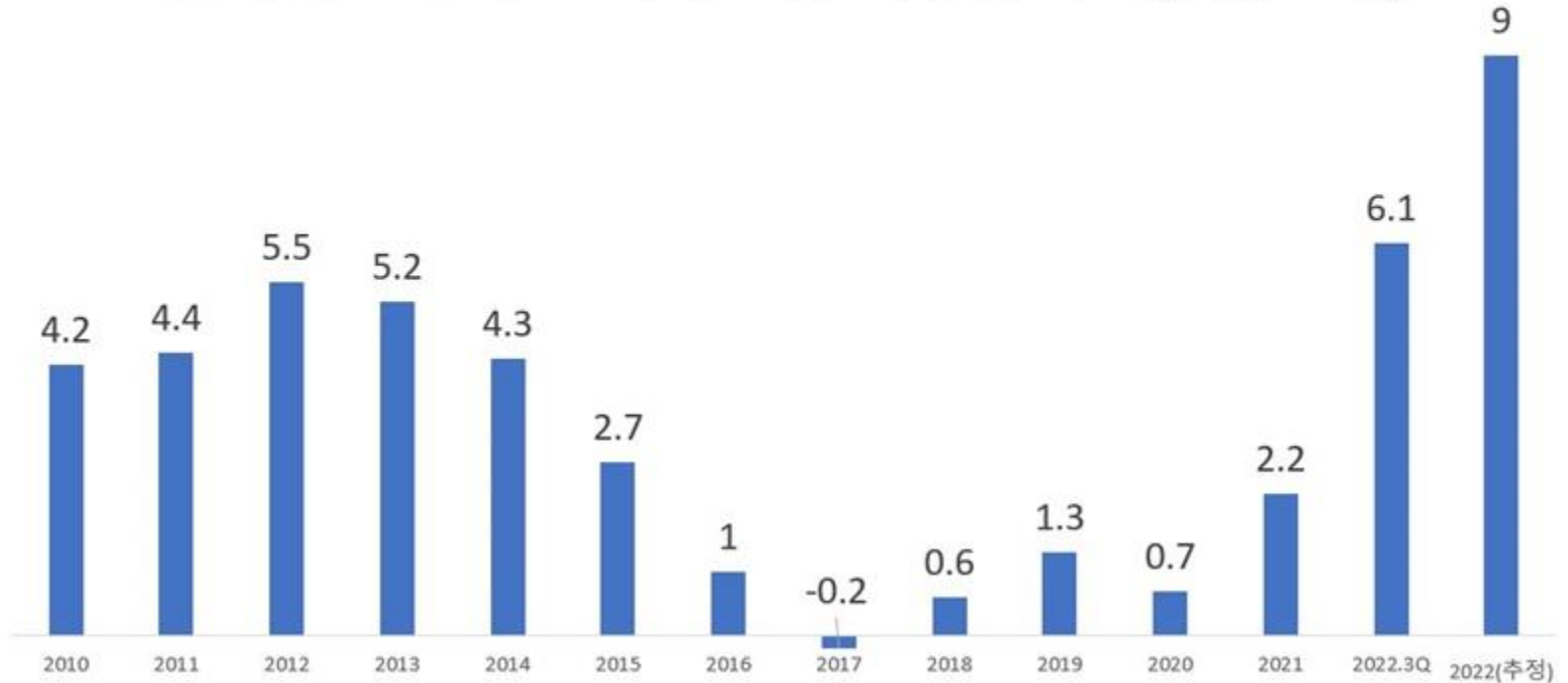
원형민 기자 20230126



참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오피넷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용 미수금 추이(단위: 조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동절기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 지원금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

에너지바우처 한시적 인상

15만 2,000원 → 30만 4,000원



**사회적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 확대

9,000~36,000원 → 18,000~72,000원

**연합뉴스** 자료: 대통령실

##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2022년 12월 - 2023년 3월(동절기 4개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기존 가스요금 할인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31만 9천 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뒷단계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차상위계층

지원액 ↑ 44만 8,000원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9천 가구\***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30만 4,000원

28만 8,000원 → 59만 2,000원



주거형 수급자

↑ 44만 8,000원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교육형 수급자

↑ 52만 원

7만 2,000원 → 59만 2,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대상,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가구 포함

표 12-23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3~2019)

(단위: 억 원, 가구, 천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담기관
효율 개선 및 보급 사업	전력효율향상 (고효율 조명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총지원액	246	356	260	218	217	187	196	전력기금 (지자체)
			지원 가구 수 (가구)	46,269	76,800	34,780	29,761	-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주택창호·단열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총지원액	411	671	613	489	489	639	819	에트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가구)	36,508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4,195	
	전기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 (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차상위(8천 원/월, 여름철 10천 원), 복지시설(주택 30%) 등	총지원액	2,533	2,617	2,623	2,748	4,831	5,540	5,712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지원 가구 수 (천 가구)	2,275	2,328	2,360	2,477	2,809	3,296	3,397	
가격 할인 사업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총지원액	684	936	997	1,027	1,121	1,188	-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지원 가구 수 (천 가구)	768	865	926	1,039	1,163	1,270	-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총지원액	48	56	59	62	65	67	-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지원 가구 수 (천 가구)	148	157	168	175	181	190	-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 원)	총지원액	52	49	39	36	32	24	20	에트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가구)	17,345	16,095	12,460	11,800	9,423	7,934	6,342	
연료비 지원 사업	연탄보조	연탄쿠폰 (2016년까지 가구당 169천 원, 2017년 313천 원, 2019년 가구당 40.6천 원)	총지원액	141	131	131	172	221	183	222	에트회계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가구 수 (가구)	83,060	76,987	77,413	73,175	63,712	58,791	54,670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총지원액	-	-	405	512	512	498	578	에트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가구 수 (가구)	-	-	494,627	523,664	545,930	565,498	641,7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 에너지 바우처 예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	지원 대상
2022년 본예산	1389억390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87만8000가구)
2022년도 본예산+추가경정예산	2305억5600만원	생계·의료급여+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117만6000가구)
2023년 본예산	1909억6300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85만7000가구)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실적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억원)	285	292	194.5	295.8	410.8	671.1	612.7
가구	68,331	43,336	21,428	29,628	36,508	42,158	40,70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예산액 (억원)	489.0	489.0	638.6	818.6	766.7	868.9	7,217.1
가구	29,468	26,128	30,385	34,195	33,233	33,319	56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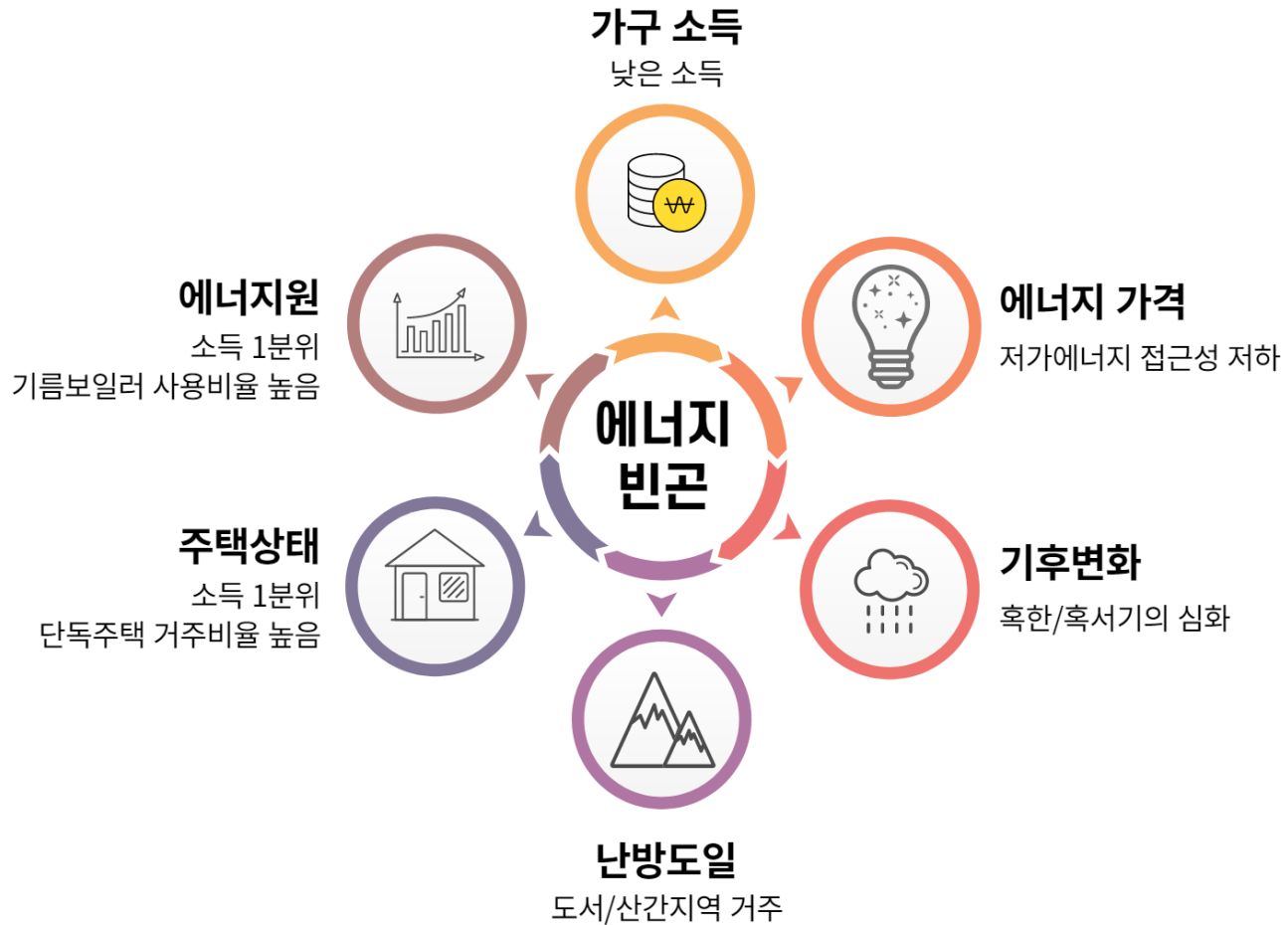


표 12-9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2009~2019)

(단위: 원)

소득분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70,644	81,033	83,963	89,008	90,015	85,518	79,118	73,639	58,246	54,946	52,480
2분위	81,348	92,323	96,323	103,664	102,945	94,108	90,027	84,433	60,633	62,518	60,615
3분위	89,698	98,616	99,875	109,744	110,551	104,843	97,760	87,930	72,414	69,004	67,003
4분위	92,772	103,318	109,622	111,547	116,932	109,868	102,889	93,153	77,993	76,831	70,649
5분위	97,095	107,205	115,387	119,792	117,598	111,726	103,142	97,063	78,293	83,547	74,523
6분위	103,375	113,422	116,385	120,975	121,663	116,585	110,431	97,132	87,906	86,526	84,169
7분위	104,920	118,577	119,137	122,078	126,031	115,188	109,686	103,343	92,951	96,096	87,906
8분위	105,705	121,818	123,008	129,232	132,170	120,989	116,011	105,231	100,653	101,189	91,250
9분위	109,607	129,468	126,805	135,425	135,093	128,646	121,889	107,689	103,047	107,179	97,888
10분위	125,596	138,863	142,750	146,162	149,350	138,323	131,005	119,993	120,946	119,022	106,898
전체 평균	98,081	110,470	113,330	118,768	120,240	112,582	106,204	96,976	85,313	85,689	79,340

주: 2009년~2016년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2019년은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표 12-10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9~2020)

(단위: %)

구분	2019				202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분위	12.0	5.9	4.3	6.7	12.1	5.9	4.3	6.6
10분위	1.4	0.9	0.6	0.8	1.3	1.0	0.6	0.9
전체 평균	2.8	1.7	1.2	1.6	2.7	1.8	1.2	1.7

주: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1.4.16. 인출)

$$\frac{\text{월평균 연료비}}{\text{월평균 경상소득}} \times 100, \text{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표 12-15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6)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Wh)	9,027	9,887	10,291	11,860	12,926	13,196	14,8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탄	6.1	3.7	1.3	1.1	0.2	0.2	0.0
석유류	23.7	19.0	12.3	6.3	4.7	2.2	1.7
도시가스	32.9	41.8	52.7	58.0	62.6	61.8	55.0
전력	31.4	29.2	27.9	26.9	24.4	24.8	23.1
열	4.9	5.0	5.7	7.6	8.1	10.8	19.9
기타	1.1	1.3	0.2	0.1	0.0	0.2	0.3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와 LPG 포함됨

2) 비율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표 12-4 거처별·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2015)

(단위: 천 가구,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계	19,112 (100.0)	524 (2.7)	2,425 (12.7)	16,162 (84.6)	12,308 (64.4)	2,312 (12.1)	504 (2.6)	670 (3.5)	160 (0.8)	135 (0.7)	14 (0.1)	19 (0.1)
주택	18,400 (100.0)	496 (2.7)	2,352 (12.8)	15,551 (84.5)	11,910 (64.7)	2,222 (12.1)	481 (2.6)	595 (3.2)	152 (0.8)	128 (0.7)	13 (0.1)	18 (0.1)
단독주택	6,739 (100.0)	0 (0.0)	0 (0.0)	6,739 (100.0)	3,694 (54.8)	2,015 (29.9)	156 (2.3)	542 (8.0)	148 (2.2)	126 (1.9)	13 (0.2)	18 (0.3)
아파트	9,196 (100.0)	493 (5.4)	2,333 (25.4)	6,370 (69.3)	6,087 (66.2)	44 (0.5)	234 (2.5)	4 (0.0)	1 (0.0)	0 (0.0)	0 (0.0)	0 (0.0)
연립주택	427 (100.0)	0 (0.0)	19 (4.4)	408 (95.6)	339 (79.4)	36 (8.4)	30 (7.0)	2 (0.5)	1 (0.2)	0 (0.0)	0 (0.0)	0 (0.0)
다세대주택	1,710 (100.0)	0 (0.0)	0 (0.0)	1,710 (100.0)	1,598 (93.5)	57 (3.3)	47 (2.7)	8 (0.5)	0 (0.0)	0 (0.0)	0 (0.0)	0 (0.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327 (100.0)	3 (0.9)	0 (0.0)	324 (99.1)	192 (58.7)	70 (21.4)	14 (4.3)	39 (11.9)	3 (0.9)	2 (0.6)	0 (0.0)	0 (0.0)
주택 이외의 거처	712 (100.0)	28 (3.9)	73 (10.3)	611 (85.8)	398 (55.9)	90 (12.6)	23 (3.2)	75 (10.5)	8 (1.1)	7 (1.0)	1 (0.1)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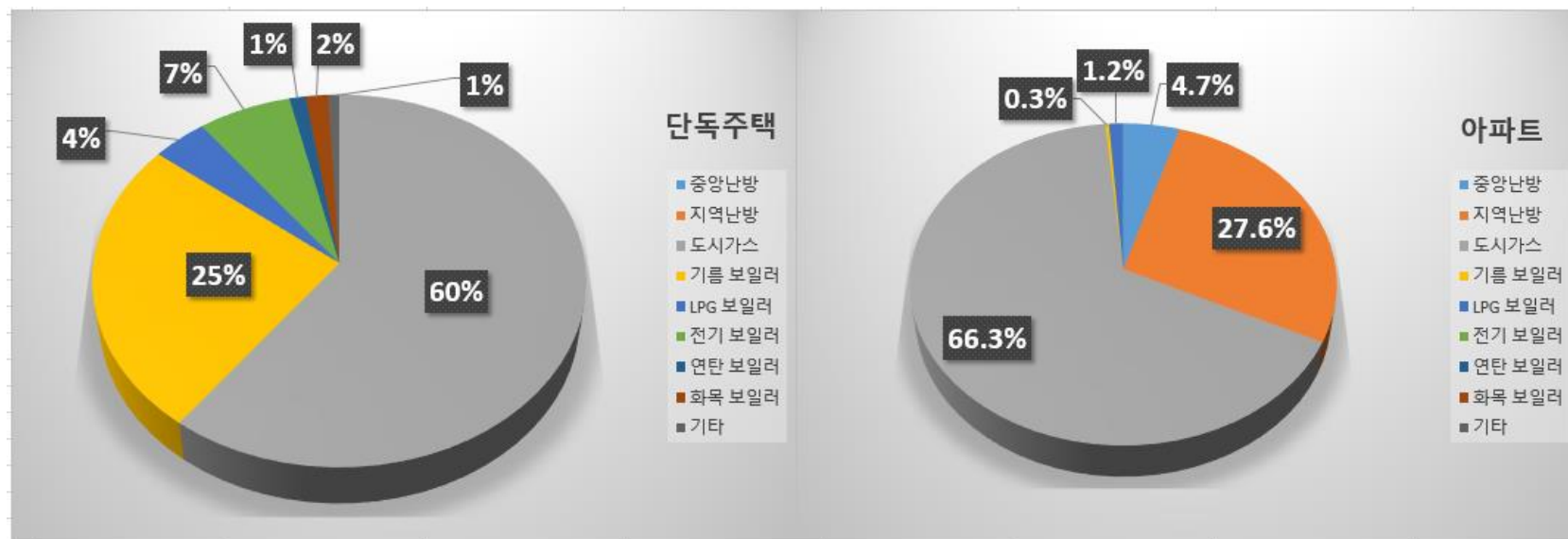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거처 종류의 난방시설 구성비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표 12-18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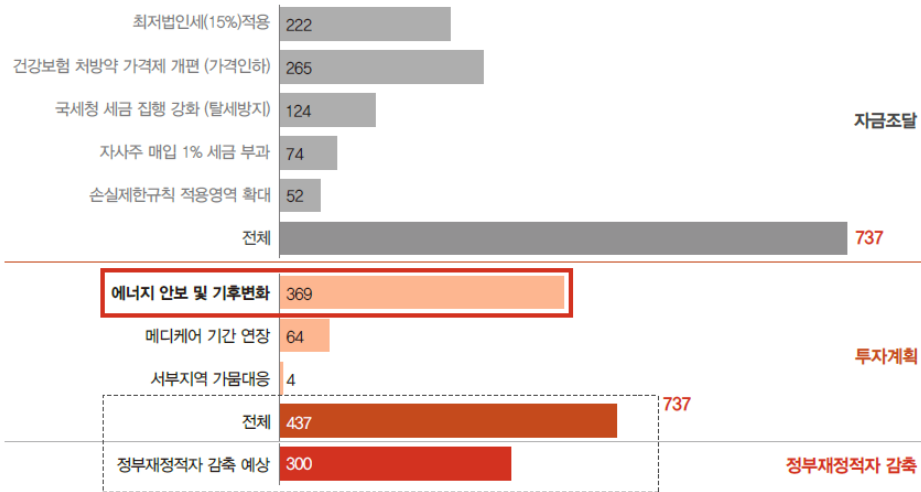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평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에너지 소비량 (천 kWh)	11,184	11,695	11,329	10,461	10,145	10,2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탄	2.0	6.9	0.0	0.2	0.0	0.0
석유류	10.8	33.3	1.2	3.1	1.9	9.0
도시가스	51.6	26.8	58.0	69.9	72.4	49.7
전력	27.1	31.5	24.9	26.3	25.8	33.0
열	8.0	0.0	15.9	0.5	0.0	7.1
기타	0.5	1.5	0.0	0.0	0.0	1.2

주: 상가주택은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거처의 종류별	난방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계	도시가스	기름 보일러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화목 보일러	기타
계(가구)	20,926,710	632,716	3,171,620	17,122,374	13,938,908	1,848,664	501,734	559,404	82,099	111,128	80,437
주택	19,841,582	515,435	3,005,341	16,320,806	13,392,059	1,753,083	474,578	466,487	75,714	103,636	55,249
단독주택	6,352,065	-	-	6,352,065	3,827,760	1,619,092	251,165	427,211	73,641	102,063	51,133
아파트	10,782,182	505,131	2,971,509	7,305,542	7,147,464	30,799	124,581	2,569	55	12	62
연립주택	441,888	2,048	28,245	411,595	360,032	19,891	29,860	1,413	299	7	93
다세대주택	1,944,997	1,917	3,195	1,939,885	1,848,403	34,785	49,598	6,680	98	30	29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320,450	6,339	2,392	311,719	208,400	48,516	19,374	28,614	1,621	1,524	3,670
주택이외의 거처	1,085,128	117,281	166,279	801,568	546,849	95,581	27,156	92,917	6,385	7,492	25,188



## How You Can Save Money

From making home weatherization and efficiency upgrades, to installing new electric appliances, to purchasing an electric vehicle or rooftop solar system – learn how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ill help cover the costs and save you money each month on your bills.

Hover over each circle to learn about the upgrades available, and scroll down for details on how these rebates and tax credits can be applied during each tax year.

표 2. Fit-for-55 대비 REPowerEU의 신규조치 및 목표치 상향 내역

REPowerEU 정책분야	중점	Fit-for-55 2030 목표	REPowerEU 조치	신규 2022 목표 (bcm)	Fit-for-55 2030 목표 대비 상향치(bcm)
가스공급원 다변화	비러시아 천연가스	-	LNG 다변화	50	50
		-	파이프라인 수입 다변화	10	10
	기타 재생 에너지	바이오메탄 17bcm 생산, 17bcm 절약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을 35bcm으로 확대	3.5	18
		재생수소 560만 톤, 9~18.5톤 절약	수소생산 확대 및 2030년까지 20Mt 수입	-	25~50
전기 공급	가계	에너지 효율 조치, 38bcm 절약	EU 차원의 에너지 절약, 건물 난방온도를 1℃ 낮추어 10bcm 추가 절약	14	10
			연간 15TWh 이하 태양광 지붕 우선 설치	2.5	조기 달성
	2030년까지 신규 열펌프 3,000만 기 설치, 35bcm 절약	향후 5년간 누적 1,000만 기의 열펌프 설치	1.5	조기 달성	
	전력부문	풍력 480GW 설치, 태양광 420GW 설치하여 170bcm 절약 (그린수소 5.6Mt 생산)	풍력, 태양광 평균 설치율의 20% 조기 설치로 3bcm 가스 절약 및 재생수소의 생산 증대로 2030년까지 80GW 추가	20	그린수소를 사용한 가스 수요 절감 / 다른 에너지원 설치율 조기 달성
산업 전환	에너지 집약 산업	조기 전력화 및 재생수소 사용	혁신기금 사용 및 탄소 계약의 범위 확대	재생수소 및 재생에너지원 목표 달성을 통해 가스수요 절감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2) 108 final, "REPowerEU: Joint European Action for more affordable, secure and sustainable energy."

## 주요국 유형별 에너지위기 정책대응 현황

	에너지 세금 감면	소매 가격 규제	도매 가격 규제	취약계층 직접지원	기업 지원
독일	√	√	-	√	√
프랑스	√	√	√	√	√
이탈리아	√	-	-	√	√
스페인	√	√	√	√	√

자료: 각국 정부, Bruegel

## 국가별/정책유형별 에너지위기 대응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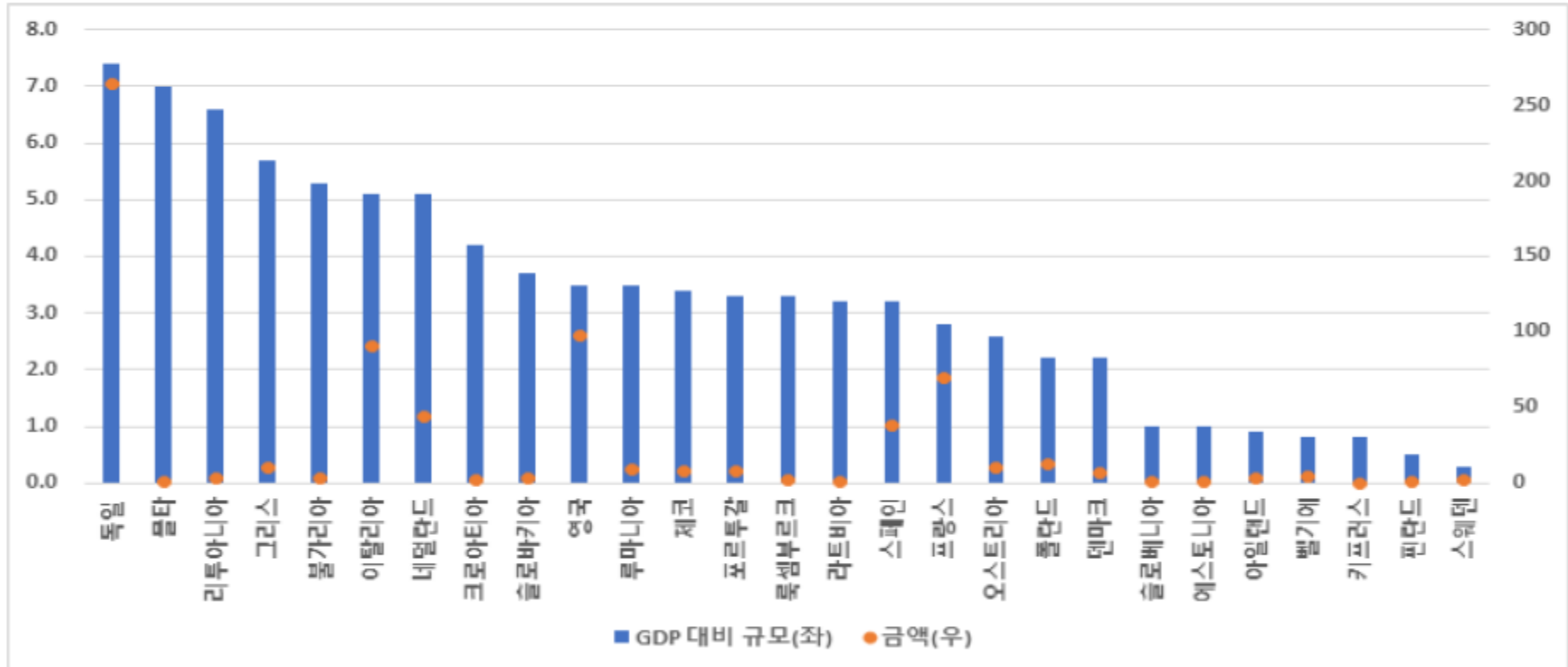
(%)

	(가계)					(기업)				
	보편/ 소득	보편/ 가격	선별/ 소득	선별/ 가격	합계	보편/ 소득	보편/ 가격	선별/ 소득	선별/ 가격	합계
프랑스	6	63	22	0	91	0	0	6	2	9
독일	52	5	11	0	67	10	18	5	0	33
이탈리아	3	39	20	0	63	0	37	0	0	37
스페인	0	46	7	0	53	35	0	12	0	47
그리스	2	38	7	2	49	0	43	0	8	51

주: 1) 2022~2023년 기준, 스페인은 2022년  
자료: 각국 정부, IMF

그림 11. EU 회원국 및 영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재정지원 규모(2021.9~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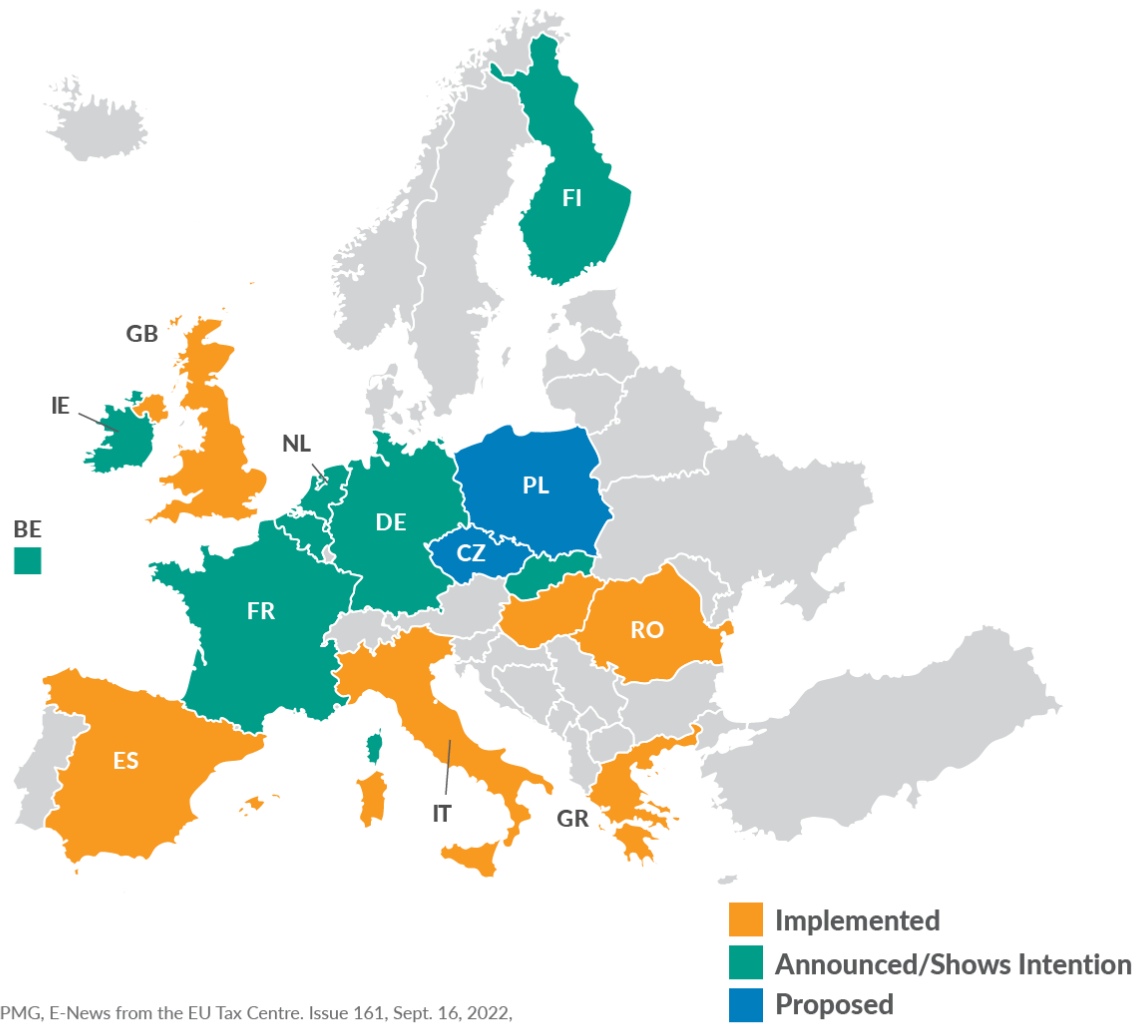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십억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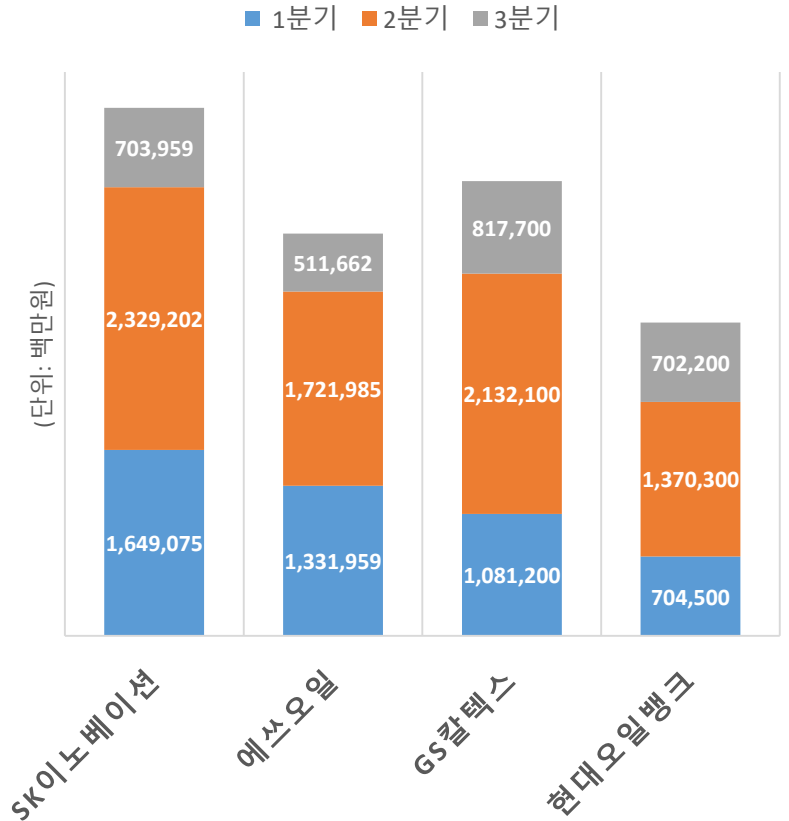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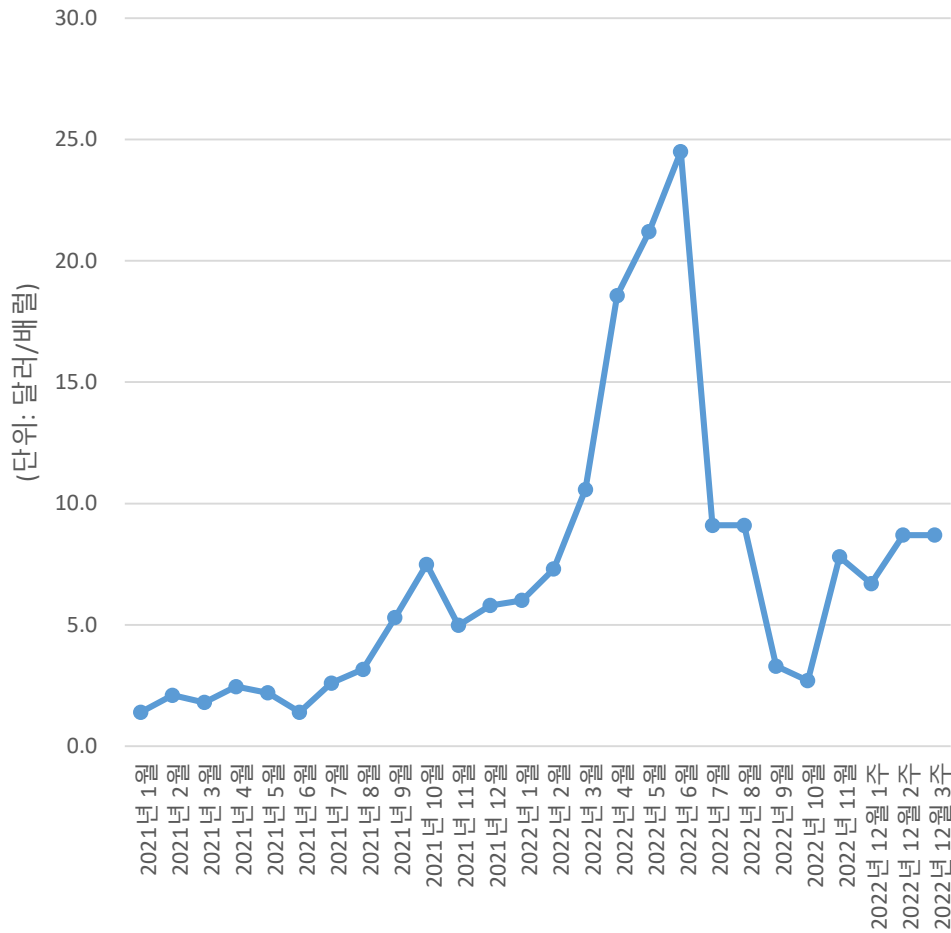
자료: Bruegel DB(검색일: 2022. 12. 5).

# Windfall Taxes in Europe

Legislative Status of Windfall Taxes in European Countries, as of September 26, 2022



Source: KPMG, E-News from the EU Tax Centre. Issue 161, Sept. 16, 2022, <https://assets.kpmg/content/dam/kpmg/xx/pdf/2022/09/e-news-161.pdf>.



\*정제마진: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을 뺀 값으로 정유 업계의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4장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개정 2009. 1. 30.>

□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 1. 26., 2014. 1. 1.>

[전문개정 2009. 1. 30.]

# 난방 효율 떨어지는 쪽방촌·노후주택 "단열 지원부터"

[JTBC] 입력 2023-01-27 08:24

안내 ▶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안내

행정구역별	20년~30년미만						30년 이상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전국	5,460,432	815,144	3,894,310	150,699	539,992	60,287	3,974,580	2,044,965	1,355,769	197,406	294,865	81,575
읍부	543,841	116,352	353,634	26,494	37,915	9,446	394,670	286,852	58,658	23,303	16,640	9,217
면부	505,167	339,609	124,499	11,816	18,970	10,273	768,116	727,660	21,646	6,878	4,376	7,556
동부	4,411,424	359,183	3,416,177	112,389	483,107	40,568	2,811,794	1,030,453	1,275,465	167,225	273,849	64,802
서울특별시	849,026	89,188	558,563	46,797	147,431	7,047	650,005	178,318	329,476	43,029	84,752	14,430
부산광역시	374,977	28,012	290,686	6,536	46,686	3,057	323,968	149,567	129,759	19,131	17,977	7,534
대구광역시	275,922	31,657	211,709	2,592	27,158	2,806	166,560	81,537	73,491	4,047	2,344	5,141
인천광역시	298,296	17,025	189,502	2,547	86,907	2,315	237,303	52,607	125,576	8,246	46,622	4,252
광주광역시	189,120	12,587	172,658	1,462	768	1,645	107,453	50,179	51,213	2,697	927	2,437
대전광역시	180,114	11,726	148,804	1,931	16,287	1,366	114,836	44,795	53,175	5,032	9,745	2,089
울산광역시	130,406	13,570	101,764	2,751	10,366	1,955	73,355	30,126	35,430	2,846	3,114	1,839
세종특별자치시	10,632	3,473	6,360	82	516	201	10,025	7,123	1,873	418	384	227
경기도	1,312,439	122,446	999,441	41,581	138,404	10,567	530,645	187,629	195,326	42,788	93,912	10,990
강원도	198,317	49,471	136,502	5,218	3,637	3,489	174,338	106,884	48,660	12,022	3,093	3,679
충청북도	187,892	43,219	133,524	4,742	3,473	2,934	159,763	98,862	44,463	7,919	4,981	3,538
충청남도	252,590	65,730	162,932	6,478	14,120	3,330	192,724	150,857	22,809	8,862	6,732	3,464
전라북도	246,024	58,026	180,111	2,896	1,848	3,143	218,779	155,492	47,692	8,508	2,761	4,326
전라남도	214,035	69,951	133,508	3,472	3,006	4,098	297,880	243,939	41,219	6,470	1,763	4,489
경상북도	320,419	89,599	202,599	6,635	15,798	5,788	338,585	249,105	62,931	13,045	7,172	6,332
경상남도	364,246	92,353	244,136	7,524	15,088	5,145	319,604	213,017	86,014	10,318	4,821	5,434
제주특별자치도	55,977	17,111	21,511	7,455	8,499	1,401	58,757	44,928	6,662	2,028	3,765	1,374

###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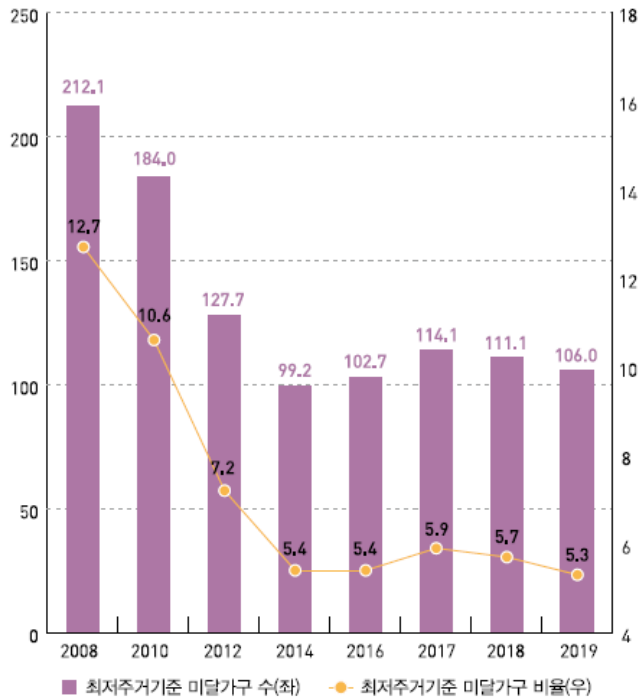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주거수준으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및 규모는 주거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 측정 산식

$$\frac{\text{면적기준, 방수기준 및 설비기준 미달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그림 11-1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및 비율

(단위: 만 가구,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 지역별·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9)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사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지역별	수도권	6.7	5.6	3.3
	광역시 등	4.3	2.6	2.6
	도지역	3.9	1.7	2.9
	계	5.3	3.8	3.0
소득별	하위	9.2	6.1	6.5
	중위	3.8	3.0	1.2
	상위	1.3	1.0	0.4
	계	5.3	3.8	3.0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0

## 최저주거기준

[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 336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부 칙 <제2011-490호, 2011.5.27>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업 유형

### 가. 에너지 전환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하고 취약계층(지역)의 에너지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사업모델의 정착 및 확산
- (주요사례) 사회적 경제조직 · 복지시설 태양광 지원사업, 영농형 태양광 지원사업

### 나. 에너지 효율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주거 · 생활공간의 노후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비용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량(비용) 절감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증진 및 온실가스 저감
- (주요사례) 사회복지시설 · 가구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사업(단열 · 창호 개선, LED · 고효율기기 지원 등)

### 다. 에너지 공급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계절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 에너지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주요사례) 혹서 · 혹한기 계절 나기 지원사업, 동절기 난방유 지원사업

### 라. 이익공유형 협력사업

- (추진방향)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장애적 요소 중 하나인 주민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장기적 선순환 모델의 정착
- (주요사례) 영농형 태양광 이익공유 사업

## 에너지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9000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2. 10. 18.>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3년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간이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8.>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일: 2023. 4. 19.] 제16조의2

가령 탄소중립법 제47조 제1항은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은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고용상태 영향조사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중 취약계층 중점 보호를 위한 정책은 폭염에 따른 쪽방촌 주민과 야외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이 정책이 취약계층 보호 정책이라고 일관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시행 2017. 5. 31.] [부산광역시조례 제5581호, 2017. 5. 31., 일부개정]

-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에너지 복지 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평가
  3.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에너지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7. 5. 31>
- **제8조(에너지 복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에너지 복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이하 복지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 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2. 에너지 복지 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에너지 복지 사업 홍보 및 에너지 복지 네트워크 구축
  4.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